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536906 손해배상(기)

원 고 김○○ (*****-*****)

서울 강동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요흠

피 고 서울특별시

법률상 대표자 교육감 문용린

소송대리인 세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용식

변 론 종 결 2013. 4. 18.

판 결 선 고 2013. 5.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41,893원 및 이에 대한 2009. 7. 25.부터 2013.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6,405,600원 및 이에 대한 2009. 7. 25.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동 ***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있던 ■■■중학교 인근에 사는 주민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지에 설치된 농구대(이하 '이 사건 농구대'라 한다)를 비롯한 시설물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위 ■■■중학교는 2009. 3. 경 이 사건 부지에서 서울 강동구 ■■■동 ***-***에 있는 부지로 이전하였고, 이 사건 부지는 2011. 3.경부터 ▲▲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어서 그때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09. 7. 25. 20:40경 이 사건 부지를 찾아가 농구를 하려던 중, 이 사건 농구대에서 마치 덩크슛을 하는 것처럼 점프를 하여 농구대의 링을 양손으로 붙잡았는데, 그 순간 농구대가 넘어지는 바람에 척추골절, 손목 및 두피외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흉추부 11, 12번 방출성 골절, 우측 쇄골 간부 골

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2009. 7. 29. 나사못고정술, 후방유압술, 정복술 등의 수술을 받았으며, 위 사고 시부터 2009 8. 28.까지 35일간, 2010. 10. 5.부터 같은 달 12. 까지 8일간 각 입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농구대를 비롯한 시설물을 관리하고 위험한 시설물이 있는 경우 위험표시를 해 두는 방법 등으로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구대를 이용하던 중 상해를 입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농구대를 비롯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현장에서 점검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중학생과 달리 건장한 체격의 원고가 야간에 이 사건 농구대를 잘못된 방법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나. 판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

다6161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농구대는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4개의 백보드와 4개의 링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인데, 원고가 양손으로 잡은 이 사건 농구대의 링만이 백보드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위 기둥 전체가 넘어진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농구대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농구대 기둥에는 녹이 슬어 있기도 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5세로서 키 185cm, 체중 86kg의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자이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부지의 운동시설물을 지역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이상 중학생 체격을 넘는 일반인이 이 사건 농구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③ 중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농구대에서 덩크슛을 하기 위해 링에 매달리는 것이 다소 위험할 수는 있으나 덩크슛이 정식 농구게임에서 금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농구대에 덩크슛을 금지하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농구대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결여되어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농구대의 관리자인 피고는 사람들이 이 사건 농구대를 이용하는 과

정에서 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를 즉시 보수 또는 철거하거나 적어도 그 위험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농구대의 사용대상인 중학생이 아니라 건장한 체격의 성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각이 농구대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야간이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덩크슛 동작을 하면서 중학생용인 이 사건 농구대의 링에 매달렸고, 그러한 경우 농구대가 성인인 원고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거나 붕괴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농구대를 이용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피고를 면책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소득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 *. **.

사고 당시의 연령 : 25세 5월 거주지역 : 도시지역

나) 기대여명 : 52.73년

다) 가동연한 및 월 가동일수 : 사고발생일인 2009. 7. 25.부터 만 60세가 되기 전

인 2044. 1. 27.까지 매월 22일

라) 직업 및 소득실태 : 도시보통인부의 시중노임 상당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고, 도시보통인부의 시중노임은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2009. 8. 31.까지는 1일 66,622원, 그 다음날부터 2009. 12. 31.까지는 1일 67,909원, 그 다음날부터 2010. 8. 31.까지는 1일 68,965원, 그 다음날부터 2010. 12. 31.까지는 1일 70,497원, 그 다음날부터 2011. 8. 31.까지는 1일 72,415원, 그 다음날부터 2011. 12. 31.까지는 1일 74,008원, 그 다음날부터 2012. 8. 31.까지는 1일 75,608원, 그 다음날부터는 1일 80,732원이다.

마) 노동능력상실율 : 32%(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척추손상 1-A-1-c항).
다만 원고는 총 4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그 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율을 100%로 보기로 하되,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시작하여 이후 43일째가 되는 날인 2009. 9. 9.까지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일실수입액(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 : 135,181,085원(산출 내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생략)

나. 향후치료비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등, 요추 부위의 수술 후 반흔을 제거하기 위해 반흔성형술

이 필요하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향후치료비

(가) 지출내용 : 6,680,000원(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수술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2. 4. 19.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한다)

(나) 계산 : 6,680,000원 $\times$ 0.8421 = 5,625,228원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30%

2) 계산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 42,241,893원[= (일실수입 135,181,085원 + 향후치료비 5,625,228원) $\times$ 30%, 원 미만 버림]

라. 위자료

1) 참작할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원고의 나이, 원고의 과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3,0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241,893원(= 재산상 손해 42,241,893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7.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우용

판사 강동원

판사 박상한